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3

연구발표



Q. 30 ~ 44

QUESTION
30



공동연구 후 출판된 논문과 공동저자 일부가 참여한 논문에서의 중복성과 연구윤리 측면은 어떠한가?

A가 박사후 과정 중 SCI급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때 공저자 B, C, D가 있었음. 이후 E가 A의 논문에 대한 생물학적 실험을 하여, A의 실험과정을 전부 포함하여 논문을 출판하였고 이때 공저자로 C, D를 등록하였음. 이때 참고문헌 등에는 A의 논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논문의 상당수가 A의 논문을 포함하였으며, 연구방법 또한 대부분 일치하였음. 이때 D는 A와 E논문에서 교신저자였음. 연구윤리에 벗어나는가?


ANSWER

본 사례에서 먼저 출판된 논문을 '1번 논문' (교신저자 : D, 제1저자 : A, 공동저자 : B, C 혹은 공동저자 : A, B, C)이라 하고 이후 논문을 '2번 논문' (교신저자 : D, 제1저자 : E, 공동저자 : C) 이라고 하겠다.

2번 논문은 이미 SCI급 학술지에 게재된 1번 논문의 연구방법을 포함하여 상당 부분을 활용하면서도 각주나(질문에는 각주 표기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참고문헌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각주에도 표기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각주에 출처를 표기했으나 참고문헌에 누락시킨 경우, 의도적인지 실수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주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의도적인 명백한 표절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참고문헌에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다면 중복게재 혹은 표절로 판정될 수 있다.

더욱이 1번 논문과 2번 논문의 교신저자 D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이 두 논문 간에 유사한 내용이 출처표시 없이 사용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면, 2번 논문의 제1저자인 E에게 시정을 요구했어야 하는데도 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E가



D를 속이고 했든, D가 묵인하는 상태에서 했든, 이미 게재된 학술지의 연구방법과 상당한 내용을 적절하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의도성이 높은 중복게재 혹은 표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중복게재와 표절 여부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번 논문과 2번 논문에 공동으로 참여한 교신저자 D가 먼저 발표된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내용을 다시 사용하고 있음을 출처표기를 통해 밝히고 있는지 또는 1번 논문의 저자 모두에게 동의를 얻었는지 아니면 적절하게 출처표시 하는 것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는지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4.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9-196.

QUESTION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표절 검색 시스템에서 사전에 심사 과정에서 취소한 논문과 신규로 작성한 논문과의 유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지요?



ANSWER

❖ 논문 심사과정에서 투고 자체를 취소하였거나, 논문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저자가 논문을 수정하여 학술지에 투고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투고하였던 미출판 논문과 후속 투고 논문과의 유사성이 표절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된다.

유사도 검색을 위해 표절 검색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이 논문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원래의 논문에서 수정된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유사도 검색을 하게 되면 비교 대상 논문이 데이터베이스에 남아있을 경우 당연히 높은 유사성을 표시해 주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유사도가 나타났다고 하여 바로 중복게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이 중단된 논문을 정식 연구 결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저자가 이전에 쓴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고, 이것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 데이터 베이스로 저장되어 있을 때, 신규로 작성한 논문과의 유사성이 확인되었고, 유사한 부분에 해당 되는 이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출처표시가 없을 때는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5.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7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67-268.

QUESTION
32**자신이 참여한 연구 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A 연구원은 다른 소속 기관의 B 연구원과 함께 공동 연구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를 연구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후 학술지에 논문으로 출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동 연구원인 B의 업무 변경으로 인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하였다. 이후 B 연구원의 업무를 승계한 C 연구원이 해당 연구 내용을 소속 기관의 허락을 받아 보고서 형태로 C 연구원의 이름만을 단독 저자로 하여 인터넷 상에 발표하였다. 만약 A 연구원과 B 연구원이 함께 공동 연구한 결과를 C 연구원이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연구윤리에 문제가 되는가? 저자권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ANSWER

부당한 저자 표시(Authorship)와 관련하여 표절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이다.

만약 C 연구원이 A와 B의 연구 결과물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고의적으로 자신의 것처럼 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되며, 또한 표절에 해당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A와 B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먼저 연구회에서 발표하였고(즉, A와 B는 발표된 결과물의 저자이며, C는 여기에 저자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음),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 이전이기는 하지만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연구 보고서를 C가 자신만의 단독 이름으로 바꿔 인터넷 상에 발표하면서도 A와 B의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출처표시를 적절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A와 B가 연구를 수행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는 C가 인터넷에 게재한 보고서를 A와 B가 표절한 것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물론 C가 게재한 연구 보고서를 정식으로 발표된 연구 결과물로 보거나 보지 않는가에 대하여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독자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A와 B가 발표하지 않았던 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학술 저널에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한다면 C가 인터넷에 올린 보고서의 저자표시를 먼저 바로잡아 저자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어떤 연구회에 발표된 것을 보완하여 저널에 투고한 사실을 명확히 저널 편집자에게 고지해야 한다(이 경우에도 후속 진행 사항을 모든 저자가 협의하여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A는 C가 인터넷에 올린 보고서로 인하여 원저자들이 겪게 될 표절이나 연구 결과물의 침해와 관련하여 우려하기 전에 C의 부당한 저자표시 행위에 대하여 바로잡아야 본인의 연구 결과물에 대해 저자권도 확보하면서 원래의 저자가 표절로 오해받는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2.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7-199.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에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박사학위 승인 이후 게재 예정인 학술지 논문이 심사과정 중인 사실을 학위논문에 표기해야 하는가?



A N S W E R

❖ 박사학위 논문이 승인되었지만, 아직 최종 인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박사학위 논문에 바탕을 둔 논문을 작성하여 전문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일 때, 이를 박사학위 논문에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박사학위 논문의 최종 인쇄와 학술지 논문의 출판 중 어느 것이 먼저일지 알 수가 없어 출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다. 물론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미간행 출판물로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학술지 논문에 박사학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동일한 데이터나 관련 내용이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에서 중복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상호 언급을 해 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각각의 논문에서 마치 처음 사용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일 학술지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이 인쇄되기 전보다 먼저 발표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박사학위 논문에는 해당 학술지의 관련 내용을 출처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71-272.

QUESTION
34



학위 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학위 논문 심사과정(예비심사와 본심사) 중 심사 대상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된 경우 문제된 부분을 수정하고 논문 심사를 지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므로 심사를 종결하고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A N S W E R

❖ 대학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절차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조치는 사안의 경중과 대학의 자율성과 관련한 문제로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다만 학위논문 심사를 받는 대학원생의 경우, 전문 연구자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는 점은 감안되어야 한다. 논문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나 심사위원은 타인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학위논문 제출자는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적극 수정해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가 심사위원의 요구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면 심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위원들은 학위논문 통과를 거부할 수 있다. 예비심사나 본심사 중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논문 심사를 종결하지는 않는다.

학위논문 심사과정은 학위논문 제출자가 쓴 논문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논문 제출자가 올바른 학위논문을 쓰도록 지도하고 또한 학위논문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부족한 점을 도와주는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논문에서 데이터가 불충분하고 논거나 문장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제출자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표절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7.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53-254.

QUESTION
35**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학술지에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들이 편집자와 동료 심사자들의 지적 사항을 모두 수정하여 동일 학술지에 다시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ANSWER

❖ 학술지의 편집자와 동료 심사자들은 주의 깊고 건설적인 지적을 통해 논문 저자들이 자신들의 연구를 개선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을 준다. 즉 동료 심사의 목적이 질 높은 논문의 출판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연구를 개선하여 학문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논문의 저자들이 편집자와 동료 심사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하여 논문을 다시 투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이러한 절차를 받은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해서는 재심사, 학술지 편집인이나 편집위원장 판단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처음 투고된 논문과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적절한 동료 심사자들을 통해 통상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8.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15.

QUESTION
36



**A와 B기관이 공동연구 수행 중에, B기관에서 A기관에 소속된
공동연구자의 동의 없이 학술지 논문을 게재하였다.
A기관에서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A 기관에 소속된 모 연구원은 자신이 주관연구책임자로 B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과 함께 협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B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A기관에 소속된 주관연구책임자와 공동 연구자들을 저자로 등재하지 않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B 기관에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가?



A N S W E R

❖ 공동연구 과제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연구에 참여하여 기여한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대하여 연구 성과의 발표 이전에 협의를 통하여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저작권 배분과 관련하여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즉, B 기관의 연구자들이 A 기관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논문을 발표했다면 명백한 표절임과 동시에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B 연구기관에 관련 내용에 대한 제보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로서의 조사 또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A와 B, 두 기관이 모두 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인 만큼 대화로서 해결을 모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저자명을 수정할 수 있는지 등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와 조사 과정은 보통 긴 시일이 소요되고, 해당 연구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공동연구에 참여한 동반자적 입장에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4.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41.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작권』, 2009, p. 3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 51.

QUESTION
37**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사회과학분야와 의학분야 연구자가 모여
공동연구의 수행 후,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두 편의 논문으로
각 학문분야에 발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사회과학분야 연구진과 의학분야 연구진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얻은 자료에 기반하여 기초적인 분석결과를 학술대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연구자 간 합의하여 독립변수를 달리하여 세분화하고 각각의 전공에 맞게 새롭게 접근하여 한편은 사회과학 분야 또 다른 한편은 의학 분야 논문으로 투고하고자 한다. 다만 서론과 이론적 배경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는 각각의 분야에 맞춰 선행연구가 사용되어 일치되는 부분이 없지만 똑같은 연구대상자이다 보니 사용한 척도, 연구대상자들의 특성, t-test 및 상관관계 등 분석결과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이 경우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가?



ANSWER

일반적으로 연구 주제와 목적 및 분석 방법이 다르다면 동일 연구 자료를 가지고 2개 이상의 논문을 출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두 개의 논문으로 나누어 발표해도 될 정도의 학술적 가치 또는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두 편의 논문이 각각 충분한 학술적 가치 또는 출판의 필요성이 있지 않다면 논문 쪼개기(salami publication)의 의혹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각 논문에 연구대상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서론 및 방법에 기술하여야 한다.

만약 두 가지 논문 중 한 논문이 먼저 게재되었다면 후속 논문의 경우 논문 투고시에 해당 학회 편집인에게 선행논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하며 후속 논문에도 반드시 선행 논문의 존재에 대해 밝히고 선행 논문과 후속 논문의 차이에 대해서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66.

QUESTION
38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다른 정부용역보고서에 재사용
하면서 용역기관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연구윤리 및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가?**

A 연구원은 모 협회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용역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모 대학의 B 교수는 연구책임자로, A 연구원은 공동연구자로 정부 용역과제를 수행 한 후 정부용역보고서에 이전에 모 협회에 제출하였던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A협회의 동의 및 출처표기 없이 상당부분을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연구윤리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인가?



ANSWER

❖ 학계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이차출판 또는 연구결과의 재사용 조건은 이전 연구결과물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도 있지만, 이전 연구결과임을 명백히 밝혀 후속 연구결과물과의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다.

즉 후속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 필연적으로 선행 연구결과가 필요할 시에는 그 출처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점이다. 즉 인용된 부분에 출처를 밝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후속 연구결과물을 접하는 독자나 사용자 하여금 모든 내용이 새로운 연구결과로 받아들이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므로 연구결과를 재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야 한다. 이는 논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보고서나 개인 저술 등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비록 이전 연구결과물에 대해 출처 표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연구결과물을 재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가치가 결여되므로 내용이 매우 부실한 보고서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연구보고서에서 명확하게 이전 연구결과와 후속 연구결과물을 분리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평가의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사실 존재한다. 따라서 A와 B연구자가 선행 보고서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모 협회의 동의를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후속 보고서에서 명백히 밝히고 재사용과 관련한 적절한 표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여전히 이중게재 및 자기표절의 소지를 가지게 된다.

연구윤리와 저작권은 유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결과의 판정 주체나 성격이 다르다. 연구윤리는 주로 연구자의 연구성과 발표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및 진실성 차원에서 연구분야의 통상적인 범례와 상식선에서 판정을 하며, 연구부정으로 밝혀진 경우 연구자에 대한 징계로 귀결되며 저작권은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결과의 소유권의 구별 및 지식재산권 침해 등과 관련한 판정이 주로 이루어진다(표절의 경우에도 법정에서 판정되어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를 수용치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37-239.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작권』, 2009, p. 3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70-71.

QUESTION
39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이공계 분야의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윤리위반에 해당하는가?


ANSWER

이공계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연구비를 수주하여 교수와 대학원생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학원생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수행한 후 그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따라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와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이 나올 수 있고, 이때 연구의 방법이나 데이터가 중복될 수가 있다. 만일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이 먼저 제출되었다면, 여기에 있는 연구 방법이나 데이터 및 해석이나 결론 등을 활용하여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대학원생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이공계의 연구의 특성상 연구윤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학위 논문 제출 이후에 이와 동일하게 또는 요약 및 발췌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 학위논문의 저자인 대학원생이 저자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0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4-7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76-277.

QUESTION
40**A 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소속을 옮겨, A 기관에 재직 당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할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기관에 근무하던 연구자가 B기관으로 소속을 옮긴 후 A 근무 기관에서 재직 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투고하려는 경우 소속 표기는 어떻게 하는가?



ANSWER

- ❖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자료 분석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를 수행한 시기와 논문을 발표할 시기에 저자의 소속이 다른 경우는 실제 연구가 수행된 당시의 기관으로 소속표기를 하고 논문 표지 하단에 저자의 현 소속 기관을 따로 기재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은 교신저자 뿐 아니라 제1저자 혹은 공저자에게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6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12.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0-191.

QUESTION
41



**연구 위탁기관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를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감사의 글로 표기하였다.
연구 주관기관에서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가?**

- 1) 연구수행 후 위탁기관에서 연구보고서 내용으로 논문으로 출판했다. 연구 주관 기관에서는 현장 모형 시험 장치를 주관기관에서 만들었으며 이를 이용한 연구이기에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논문을 작성한 것은 표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감사의 글을 작성했으며 한두 개 그림에 인용문헌을 달지 못하였다. 표절에 포함되는가?
- 2) 연구결과의 소유가 주관기관에 있으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논문 작성이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확인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가?



ANSWER

- 연구의 수행 전에 연구와 관련된 협약서 내지 계약서에 연구 결과물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파악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해당 연구를 직접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선행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문헌으로 표기하고 감사의 글을 작성한 점이다. 출처표기를 빠뜨리지 않은 다른 부분에서는 인용법을 빠뜨리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고의적인 중복게재나 표절로 판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인용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음을 안내하고, 출판된 논문에서 수정이 가능한지 해당 학회에 문의하여 관련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확인서로 인한 법적 불리 여부 문제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므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 참고로 이러한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소유와 관련된 법적 사례 등에서는 연구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례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관 연구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부수적으로는 저작권 분야의 전문가와의 전문적인 대응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6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113.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1-6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251-254.

QUESTION
42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논문 1(게재 승낙 상태)

- 가정: 환경 “A”에서 “B”기법을 사용
(단, B기법의 세부 종류가 많으므로 분석의 편의상 B기법들 중 B-1 방식 기법을 가정하고 또한 a라는 특성을 갖도록 가정. 타 논문에서 유사한 기법이 고려된 바 없음.)
- 본론: 현상 “C” 분석 및 방법 “D” 제안

논문 2(제출 전)

- 가정: 환경 “A”
- 본론: B-1-a 기법 제안 및 구체화, 해당 기법에 따른 현상 “E”분석

즉, 기 제출된 논문에서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는 B-1 방식 기법을 사용한다.” 정도로 본론을 위한 가정 정도로만 다루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넘어간 기법 “B-1-a”을, 다른 논문에서 “B-1-a+”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기법 자체만 다루어도 자기표절에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래는 논문 2를 먼저 제출한 후 논문 1에서 참고문헌으로 논문 2의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인용하려 하였는데, 연구원들 사정상 논문 1이 먼저 제출되고 출판이 결정되어 관련 내용을 문의드립니다. 논문 본문에서 참고문헌 인용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지, 아니면 참고문헌 인용을 통해 밝히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등등 조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NSWER

질문자가 제시한 두 논문은 동일한 환경(A)에서 출발하지만, 이에 적용한 기법이 다르고, 본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상과 방법이 다르므로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로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논문 2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논문 1의 환경 A나 B기법 등 중복되는 중요한 부분이 활용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교되는 두 논문 사이에 가설의 일부가 같고, 샘플이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분석 및 해석의 초점이나 방향이 다르고 이에 대한 논의의 중점이나 결론이 다르다면, 그리고 두 논문에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다면 두 개의 논문은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다른 논문이므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거 및 참고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70-71.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66.

QUESTION
43



석사학위 논문의 결과로 연구비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가?

화학 분야의 대학 연구자입니다. 석사학위 논문이 2월에 발간된 후에 비슷한 주제로 교내 학술연구비를 4월에 신청하여 7월에 그 결과물을 학술지의 논문에 실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석사 논문의 내용입니다.

1. 전반적으로 연구윤리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다만, 2월에 졸업 당시부터 석사 1년 차가 같이 일하였고, 결과물을 제출할 7월까지 일부 연구를 1년 차가 수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실을 추가한 것은 아니고 재현성 차원에서 실험하였습니다.(연구노트 기록)

이 경우,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인가요?

또 다른 하나는, 2월에 학생이 졸업한 뒤에 7월에 논문을 내는 것은 괜찮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교내 연구비를 4월에 비슷한 주제로 신청하고 7월에 결과물을 제출한 것이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2월에 학생이 졸업했으니 연구는 완료되었는데, 4월에 같은 주제로 교내 연구비를 신청하고 7월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때에 학생의 졸업 논문을 사용했으니 심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끝난 연구로서 신청하고 결과물을 제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1.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2. 거의 같은 주제로 후임의 석사 1년 차가 2월부터 7월까지 계속 연구한 경우 (연구노트에 기록)라면, 졸업한 학생의 단독 연구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경우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인가요?




ANSWER

❖ 통상 연구비를 지원받는 과제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주제로서 새로운 연구 성과를 제출할 것이 기대된다. 새로운 주제로 연구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학위논문으로도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연구비 지원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처럼, 학위논문을 통해 이미 어떤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고, 이와 비슷한 주제로 연구비를 신청하여 그 결과물로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이 학위논문과 거의 동일하다면, 연구비 신청 때부터 새로운 주제에 대한 기획이 아니고 이미 발표된 내용이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만일 다른 석사 1년차가 이미 나온 학위논문의 내용과 거의 같은 주제로 연구를 하였다고 한다면, 이미 나온 학술지 게재 논문과는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이것이 없었다면 연구 설계부터 적절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6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27.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 56.

QUESTION
44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한 결과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사용한 후에
졸업 이후에 국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가?**

저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졸업논문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시작과 동시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을 수행하여 2년이 지난 지금 사업은 종료되어 결과보고서는 제출하였지만 아직 논문은 출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학교와 공동연구도 진행하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받은 사업으로 연구한 결과를 졸업논문으로 사용한 후에 졸업 이후 국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박사과정 중에 저는 활성 산소나 혈류량 분석에 대하여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졸업 논문을 새로운 기법에 대한 리뷰지 형식으로 쓰고 싶은데요. 학기 중 연구한 각기 다른 주제들을 갖고서(총 4가지 연구) 졸업 논문을 리뷰지 형식으로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리뷰지에 들어가는 주제들은 각각 다른 국외 학술지에 투고하려고 하는데요. 졸업 이후 졸업 논문에 사용한 각기 다른 주제의 연구들을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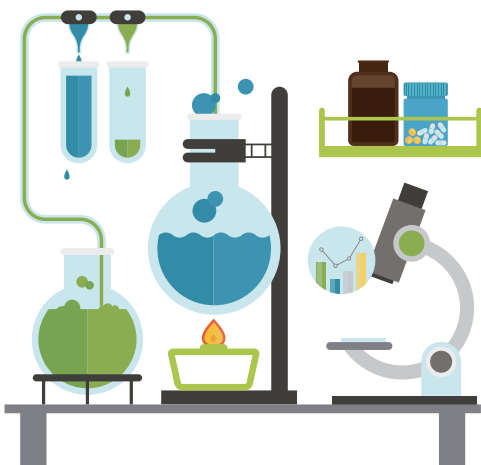
ANSWER

이공계에서는 학위과정 중에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학위논문에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학위논문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여 국외 학술지 게재 논문을 만들 때, 출처표시 없이 사용해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가의 여부는 관련 학문 분야에서 학위논문을 공식적인 출판물로 보는가 보지 않는가에 따라서 또는 해당 학술지의 학위 논문을 활용한 논문 투고에 대한 출판 정책이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나 타당한 관행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고 이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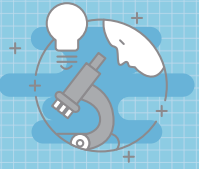
그렇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는 학위논문도 PDF로 전환되어 과거와는 달리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학위논문 내용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박사학위 논문을 어떤 방식으로 써서 제출하느냐의 문제는 해당 대학의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따르면 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6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277.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CHAPTER 4

저자표시



Q. 45 ~ 59

QUESTION
45



지도교수로부터 논문지도를 받아 논문을 출판할 경우 적절한 공로배분 방법은 무엇인가?

박사과정 대학원생이 디자인 연구를 통해 학위논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이때 지도교수로부터 학술지 논문을 먼저 출판하도록 권유를 받고 있다. 지도교수는 교신저자를 원하고 있으나, 대학원생이 생각하기에 지도교수는 중간 검토 및 코멘트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신저자를 부여할 경우 향후 자신이 단독으로 디자인 출원 등을 할 때에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논문에 저자권을 부여할 경우 후속 저작권에도 영향을 끼치는가?



ANSWER

◆ 논문 저자 자격과 저작물의 권한과 관련된 사례 중 하나이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많은 대학들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당한 저자 표시란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거나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질문의 내용을 볼 때, 과연 지도교수가 저자 유형 중의 하나인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교신저자는 해당 논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논문 투고 과정에서 학술지의 편집자들과의 연락을 통해 논문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있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논문이 게재된 이후에도 독자로부터 오는 질문이나 코멘트 등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응답할 책임을 갖고 있다.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분쟁(authorship dispute)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의 목표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상의하여 저자의 역할을 나누고 이에 맞는 공로 배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 국제적인 관행이다. 즉, 연구 참여자 간에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소통하여 저자의 역할과 순서를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사례에 관해 지도교수와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결정해야 한다. 논문에서 저자권을 인정하였다고 무조건 후속 저작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척도로 여겨질 수는 있다.

저작물 관련 저자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수행 및 결과물 발표 전에 논문과 후속 저작물 개발 과정에서의 참여 여부 및 역할, 결과물의 소유 등에 대해서도 합의하여야 하며, 가능하다면 기록으로 남겨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6-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QUESTION
46**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포스터 발표 당시의 교신저자를 후속 논문 출판 시에도 교신저자로 인정해야 하는가?



ANSWER

❖ 포스터 발표에서의 교신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도 무조건 교신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터 발표 이후에 후속 논문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저자마다 기여한 역할이 다를 수 있고, 또 후속 논문에서의 교신저자가 합의에 의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논문에서 누가 교신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 연구 논문이 나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고, 그에 따라 교신저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스터 발표에서 기여한 저자들이 후속 논문에서는 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후속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저자로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한 포스터 발표 내용과 후속 논문 간에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중요한 차이에 대한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하여 그가 새로운 저자로 등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터 발표에서 교신 저자인 사람이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논문에서 당연히 동일하게 교신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3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6-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QUESTION
47



연구를 수행한 후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직하였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이직 전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의 집필진에서 제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A 기관에서 연구를 수행한 이후 타 기관으로 이직한 B 연구원이, A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보고서가 책자로 발행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는데 확인해 보니 집필진에서 제외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원 B는 A기관에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가?



A N S W E R

본 사례의 핵심은 B 연구원이 A 기관에 근무할 때 수행한 연구 보고서에 저작권을 부여할 만한 기여를 하였는가에 있다.

B 연구원이 A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저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연구 주제 선정 및 자료 수집, 분석과 해석, 보고서 작성 등)을 하였다면, 비록 퇴사를 하였다고 해도 그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출간할 때 저자로 등록되어야 마땅하다.

여기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해당 보고서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저자 변경 등에 대한 협의 진행 여부이다. 사전에 저작권을 가질 만한 모든 저자들과의 협의 없이 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의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된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는 자신이 기여한 역할에 대하여 정당한 업적 배분을 받아야 하며, 만일 저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했음에도 그 업적 배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면, 그러한 부당한 저자 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A기관에서는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0.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9-19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37-41.

QUESTION
48**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저자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른 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대학 교수이면서 공공기관장을 겸하는 연구자가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을 통해 논문을 작성하도록 하고 자신은 논의 과정에서 논문 제목 등의 코멘트 외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자신을 제1저자로 논문을 투고하였다. 다른 공동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



ANSWER

❖ 부당한 저자표시는 저자로서 실질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자에서 배제시키거나 저자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연구의 주제 설정(중요한 아이디어 제공)과 실험 등 데이터 수집과 분석 및 해석, 논문의 초고에 대한 학술적으로 중요한 코멘트, 논문의 초고 집필과 이에 대한 리뷰 및 승인 등을 해야 저자의 자격이 주어진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기관장은 논문 제목에 대한 코멘트 이외에는 실제로 논문 작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럼에도 제1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혹 이 연구를 위해 해당 기관장이 연구비를 수혜 받는데 기여했으므로 자신이 제1저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바, 연구비 수혜에 도움을 준 사람의 경우, 제1저자가 아닌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을 통해 그 감사함(고마움)을 표시해도 된다.

만약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학술지에서는 부당한 저자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자신들의 논문 출판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각 저자들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부당한 저자표시로 인한 악영향은 없는지 파악해야 한다.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할 경우 정당한 연구 업적을 가져야 하는 연구자가 피해를 당하게 되고, 묵인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학술지가 자율적으로 올바른 저자표시의 기준을 수립하여 활용해야 한다.

학술단체나 출판사가 부당한 저자표시를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또 이러한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 어떤 예방 조치나 제재를 취하지 않을 때, 연구부정행위로서의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이의 제기나 제보 등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43.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89-19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QUESTION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저자권의 인정 기준, 심사위원의 저자 인정 여부, 자료 수집한 공동 연구원의 인정 등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A N S W E R

❖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해당 논문에 실질적인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이 논문의 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의 저자인 학생과 이를 지도한 지도교수가 그 기여도 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 학위논문을 동일 또는 거의 그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경우,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도 학위논문과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학술지에게 게재할 때 지도학생이 제1저자가 되고,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은 연구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만일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학위 논문의 내용과 차별화될 수 있는 새롭고도 학술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제1저자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위 논문의 심사위원이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했다면 그에 맞는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본다. 또한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자료 수집에 도움을 준 사람의 경우도 그 역할이 단순히 설문조사에서의 자료 수집을 돕는 것이 아니라 저자로서의 실질적 기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저자의 자격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51.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6-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QUESTION
50**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기존의 교신저자를 제외할 수 있는가?**

이미 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나 새로운 분석법을 적용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같은 제목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하려고 한다. 포스터에서는 공저자로 등재되었으나 자료 수집, 분석, 내용 정리 및 결론, 제언 등 모든 과정의 대부분을 주도하였다. 포스터의 교신저자는 해당 내용을 학술지에 논문으로 투고할 의사가 없다. 이때 포스터의 교신저자를 제외하고 학술지 논문의 교신저자로 논문을 투고 할 수 있는가?



ANSWER

이 경우 우선적으로 포스터 논문의 교신저자와 저작권에 관련한 공식적인 확인절차가 필요하다. 기존 공동 저자의 주도하에 새로운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한 후 단독 투고하고자 하는 의사를 기존 교신저자 및 모든 저자에게 전달하고 단독 투고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면, 단독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교신저자는 대부분 지도교수이거나 연구책임자의 비율이 높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터 발표 시에 교신저자로서 등록이 된 이후 후속 논문의 수행 및 투고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기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저자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를 확보하고 기록으로 남겨 명확히 하여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저작권 이슈는 연구과정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간에 생기기 마련이므로 상당히 예측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해명 및 규명 등이 어려우며, 학생이나 참여 연구원에게 특히 곤란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 논문의 작성 방향과 저작권 관련 사전 동의를 얻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구두 동의만을 믿고 진행하였을 경우, 향후에 당사자의 입장이 바뀔 경우 저작권 협의 과정을 설명하기 쉽지 않다.

후속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해당 학회에 후속 논문이 포스터 발표에서 사용한 연구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거나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안내하여야 하며, 논문에서 포스터 발표와 중복되는 부분의 경우 인용을 하거나 참고문헌의 기재 및 출처 코멘트 등과 관련한 조치를 해당 학회와 의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근거 및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판과 저작권』, 2009, p. 47.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KIRD, 『연구자를 위한 저작권 매뉴얼』, 2013, pp. 72-73.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5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7-198.

QUESTION
51



선행 연구에 참여한 저자들이 후속 연구에서 저자의 순서를 바꾸어 연구 결과를 출판할 수 있는가?

공동연구 참여자 A, B가 후속 연구에서 B가 연구책임자, A가 참여연구원이 되어
선행 연구 결과를 재사용한 가능한가?



A N S W E R

❖ A, B의 두 연구자는 모두 저자(Author)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 간에 후속연구에 대한 연구의 수행과 관련한 역할을 정하고, 저작권 관련 협의를 하였다면 후속연구에서 저자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가능하다.

저자의 순서를 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해당 연구에서의 기여한 정도라 할 수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선행 연구와 달리 연구에 참여하는 역할과 기여하는 정도가 달라졌다면 이를 반영하여 저자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정당하며 당연한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86.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7-199.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9.

QUESTION
52**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작권을 부여
해야 하는가? 저작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A는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려고 한다. 그런데 논문 작성 과정 중 특정 물질에 대한 간단한 분석 데이터가 필요하여 이를 같은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 B에게 부탁하여 데이터를 얻었고 이를 논문에 데이터로 사용하고자 한다. 대학원생 B는 단순히 측정을 통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을 뿐 A의 논문 초고 작성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연구진행 과정 중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때 B는 논문에 공저자로 등재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ANSWER

❖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s Editors, ICMJE)에서는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설계를 하거나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둘째, 논문 초안의 작성에 관여하고, 셋째, 반드시 투고 전에 최종본을 읽고 논문투고를 승인해야 한다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만약 연구에 다소 기여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적는 것이 적절하다. 논문의 저자는 그 논문에 대해 공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므로 저자는 논문의 내용을 알고 있고, 데이터의 생산 과정, 방법, 그 해석 및 그 가치의 타당성에 대해 논리적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논문 초고에 대해 코멘트하거나 실험의 목적을 인식치 못한 채 데이터 측정만을 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B는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사의 글'에 이름을 명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5.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4-195.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194-195.

QUESTION
53



부당한 저자표시를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가?

연구부정행위 중 부당한 저자표시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에서, 저자를 부여한 자가 연구부정행위의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인가?



A N S W E R

❖ 연구부정행위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는 문제된 논문의 모든 저자이다. 따라서 일단 교신저자와 선물저자(혹은 명예저자) 모두 피조사자가 되며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피조사자의 책임 범위가 결정된다.

부당한 저자표시는 일반적으로 연구 책임자인 교신저자가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교신저자가 선물저자의 동의 없이 저자자격을 부여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책임은 100% 교신저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게 저자가 된 명예저자가 교신저자와의 상호 합의에 의거하여 저자자격을 부여받았다면 명예저자도 당연히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저자로서의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부당한 저자 자격을 먼저 요구하였거나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당한 저자표시를 거절하지 않고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 책임자인 교신저자가 가장 큰 책임을 가지게 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5. 11. 3. 교육부 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연구윤리정보센터,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2014, p. 98.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 196.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 63.

QUESTION
54



학술지에서 저자의 허락 없이 저자를 변경한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가?

저와 20여 명의 저자는 최근 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저자가 여러 명이었기 때문에 group authorship형식으로 투고를 했습니다. 논문의 title page에는 그룹명을 쓰고, 논문의 뒷부분에 저자의 명단을 첨부했습니다.

그런데 학술지 측에서 저자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그룹명을 저자로 하고, 실제 저자 이름은 저자로 등록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김순희, 이철수, 홍길동이라는 저자가 '한국문화재단'이라는 그룹 저자명으로 논문을 투고했는데 학술지 측에서는 이 논문의 저자를 '한국문화재단'이라고만 등록시키고 김순희, 이철수, 홍길동 각각의 저자는 저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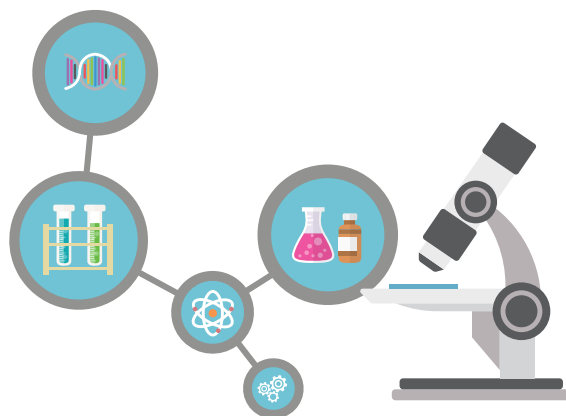
이 배경에는 어이없게도 한국문화재단이 학술지 측에 저자들을 인정하지 말도록 하라는 외압이 있었습니다. 저희 저자들은 각각의 저자를 저자로 인정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학술지 측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논문을 작성해 놓고도 저희 저자들의 이름으로는 논문이 검색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학술지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를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요?




ANSWER

❖ 학술지 논문에서 저자 표시는 저자의 업적 인정과 연구의 과정과 내용에 책임을 지는 것과 관련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논문 표지에 그룹 저자명이 나오고 논문 뒤에 저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실제 논문에 기여한 저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한 업적 배분이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외압에 의해 학술지 측에서 각각의 저자를 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본다. 물론 그룹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학술지 나름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해당 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만일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저자들의 저자 표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재 이러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해당 학술지를 발행하는 편집위원회 내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검토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8-69.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49-51.

QUESTION
55



부당한 저자표시를 강요받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제보할 수 있는가?

대학 강의를 나가던 학교의 중국인 대학원생의 연구 논문을 그 학생과 제가 공동으로 연구한 사례입니다. 논문을 처음 진행하게 된 시점에, 당시 저는 그 중국 학생 본인이 한국 말이 서툴고 논문 작성에 대한 경험이 없어 저에게 교신 저자로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의뢰받았습니다. 그 학생의 지도교수 또한 본인의 역량을 벗어나 지도하기 힘들다는 소견과 부탁을 받아 저와 중국 학생이 단 둘이 논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 학생이 작성한 한국어가 엉망인 논문의 완성도는 약 40% 정도였으며, 그 논문을 가지고 제가 수정한 다음 어느 한 학회에 논문 심사를 의뢰한 결과 논문의 '게재 불가'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중국인 학생의 SOS를 받고, 시간을 좀 더 갖고 생각하였지만, 그 중국인 학생의 한국어 실력과 논문 작성 실력에 신뢰가 쌓이지 않았고, 그 학생에게 맡겨 놓으면 논문이 완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가 스스로 혼자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약 80%의 전면수정을 거쳐, 이번에는 결국 다른 학회에 중국인 학생을 주저자로, 저를 교신저자로 하여 논문 투고하였습니다. 이후 그 논문은 '수정후 게재' 판정이 나왔으며, 교신저자인 저 혼자 수정 과정을 거쳐 논문 심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이제야 논문이 거의 완성 단계, 즉 '게재 가' 판정이 나올 시점인데, 갑자기 그 중국 학생의 지도교수가 본인을 중국 학생의 지도교수라는 명목으로 저자 삽입 및 논문이 거의 완성된 이 시점에 갑자기 연구에 참여하여 공동저자로서 간섭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자, 그 교수는 제가 논문을 투고한 학회에 전화를 하여, 투고 논문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저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논문 파일을 달라고 강요하는 방식으로 저를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학생의 지도교수가 논문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메일 내용 및 수정 진행 상황의 메일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논문이 통과될 시점에 저자 추가 삽입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어느 곳에, 또 어떻게 연구윤리 위반을 제소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싶습니다.




ANSWER

❖ 논문의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즉,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제공, 데이터 수집/분석/해석, 논문의 초고 작성 및 중요한 부분의 교정, 투고 논문의 최종본에 대한 승인 등이 있어야 한다. 질문자의 사례를 보면, 중국인 학생의 지도교수는 현재 질문자가 투고하여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서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므로 저자가 될 수 없으며, 그럼에도 저자로 넣어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저자표시를 중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당한 강요에 의해 해당 논문에 저자로 등재되지는 않았으므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지만 연구부정행위의 공모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련되게 하는 것도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즉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일단 그 지도교수에게 부당한 저자표시의 강요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분명하게 그 요구를 거절해야 하며, 만일 그럼에도 여전히 강요가 지속된다면, 그 지도교수가 속해 있는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여 적절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제14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7.

QUESTION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본인은 2011년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석사과정을 밟고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졸업을 하였습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경 어떤 강의를 수강하면서 수업 과제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후에 저의 지도교수님이 된 교수님과 함께 그 내용을 발전시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서론과 문헌연구, 연구 문제까지 제가 집필하였고, 일부분 교수님이 문장 등을 수정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실험물인 설문지는 제가 제작하였습니다. 데이터는 리서치회사에 의뢰하여 획득하는 한편, 부족한 부분은 제가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추가하였습니다. 그 후 결과 값을 SPSS로 돌려 표로 정리하였고, 교수님은 연구결과와 결론은 본인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졸업 학기인 2013년 상반기, 교수님은 ○○○○ ○○에 저를 제2저자로 하여 논문 투고를 신청하셨다 말씀하셨고, 저 역시○○○○○로부터 2013년 6월 14일 논문 투고 증명서를 메일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거의 일 년이 지나도 이 논문을 학술지에서 보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은 졸업 후, 교수님과 왕래가 없었으며 교수님으로부터 어떠한 메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썼던 논문을 검색했을 때, 찾을 수 없어 논문이 채택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10월 25일) 학술지에 등재하기로 약속했던 논문이 ○○○○○○가 아닌 ○○○○에, 교수님의 이름만 올라간 채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작권 및 표절에 관해 공동저자로서 저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적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논문을 수정하며 주고 받은 메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들었는데 그에 대한 판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석사학위 논문이 통과된 후, 교수님께서 제 논문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 제 논문을 수정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논문에는 저의 이름이 앞에 있었지만, 저는 교수님께 학술지 게재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작자와 협의 없이 무단 게재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 ❖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보면, 연구부정행위로서 “부당한 저자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예로,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본 사례에서 학술지 게재 논문이 석사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거의 그대로 혹은 보완한 것인지, 아니면 학위 논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다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그렇지만 질문자가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 저자로서의 실질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저자로 등재되어 업적 배분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 그런데, 저자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가진 질문자를 저자로부터 배제하고 지도교수 단독 저자로 등재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 **질문자가 해당 논문에서 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했음에도 저자가 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지도교수가 속한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모아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제보를 하는 것이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7.
- 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리 관련 연구윤리 실무 매뉴얼』, 2014, pp. 49-51.

QUESTION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석사학위 논문에 관한 몇 가지 사례를 여쭙보려 합니다. 석사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석사학위 논문 저자가 주저자,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면서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논문 저자가 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갑자기 교신저자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석사학위 논문의 내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요약, 정리되어 학술지에 게재되었는데, 저자의 위치가 뒤죽박죽되고 아마도 지도교수와 개인적 교분이 있는 타 대학 교수가 뚜렷한 기여 없이 교신저자로 들어오는 경우에 정당한 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 경우 교수직을 가진 사람들은 각 대학에서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네요. 더욱이 윤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과연 이 문제를 연구윤리 차원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A N S W E R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석사학위 논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 바람직한 저자표시는 학위논문의 저자인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학위논문에 근거를 두었지만, 학위논문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고, 그 다른 부분이 지도교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면, 그리고 이 다른 내용에 관한 역할 수행이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 배분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지도교수 또는 다른 사람이 그에 맞는 저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문의 사례는 석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의 내용이 바뀌지 않고 단지 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등재하는 것 이외의 저자표시는 부당한 저자표시라고 할 수 있다.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pp. 63-67.

QUESTION
58**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할 때, 지도교수가 아닌 사람이
공동저자로 등록되는 것이 연구윤리에 위배되는가?**

이과 계열의 공동연구에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학위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투고할 때, 지도교수가 아니더라도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히려 연구에 참여했음에도 지도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연구의 저자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연구에 참여하여 기여한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배제하는 것으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위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부나 연구재단에서 발주한 과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한 후, 그 논문을 발췌하여 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도 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원들을 공동저자로 등록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부디 관련 학계나 학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SWER

❖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경우,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은 “지도교수가 단독으로, 또는 학위논문의 저자가 아닌 제3자가 제1저자(주저자)로 학술지 등에 게재/발표하는 경우”를 연구부정행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학위논문과 거의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요약 내지 발췌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하여 게재할 경우, 해당 논문에서 실질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학위논문의 저자로 보기 때문에 그에게 제1저자(주저자)로서의 업적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학위논문에 기반을 두었지만 학위논문과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학술지 논문이 게재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 또는 제3자가 그 의미 있는 차이에 대하여 실질적 역할을 하였고, 그것이 제1저자로서의 역할이었다면 학술지 논문에서 이에 부합한 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타당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위논문을 발췌하여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저자로서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의 자격을 주거나 저자로서의 정당한

역할을 했음에도 저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연구부정행위에 속한다는 점이다. 학위논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또는 단순히 요약 내지 발췌하여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라면, 학위논문의 저자나 지도교수가 각각 제1저자 그리고 공동저자로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외의 경우, 즉 제3자가 제1저자 또는 공동 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이에 합당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연구윤리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자격에 대하여 국제의학학술편집자위원회(ICMJE)에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다른 학문 분야에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누가 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는 참조할 수 있다고 본다.

- 가)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를 수집/분석/해석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자
- 나) 논문의 초안을 만들고 학문적으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을 한 자
- 다) 출판될 논문 최종본을 승인한 자
- 라) 해당 논문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 근거 및 참고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 11. 3), 제12조, 제13조.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05, pp. 68-69.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6-199.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부록1), 2008.

QUESTION
59

저서 출판과 관련된 저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

저서를 발간할 시 하나의 저서 책자에 챕터별 저자가 있을 때 실적 등록 기준은 저서 전체의 챕터별 저자 모두를 포함해야 하는지 각 챕터별 실적을 분리해서 등록을 해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서 한 권의 챕터별 저자를 모두 더하면 저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자 한 분이 챕터 실적을 등록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통상은 저서라 함은 저서 1권당 저자를 모두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 문의드립니다.



ANSWER

공통 연구의 경우, 저자 표기의 순서는 참여한 사람들의 합의에 따르되,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제1저자로서 가장 먼저 오게 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저서를 출판했을 때 업적 인정은 소속 기관의 업적 인정 방법이나, 인정율에 따르면 된다. 한 챕터의 저자가 해당 챕터의 실적을 등록하고자 할 때, 출처표기 방식은 “book chapter의 저자명(연도), book chapter 제목, 단행본의 (편)저자명, 단행본 제목(book chapter의 페이지), 출판지: 출판사” 순으로 하면 된다.



근거 및 참고

- 이인재,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동문사, 2015, pp. 197-199.
- APA 출판 매뉴얼(2015)